

#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 순 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61
----------	---------

발의연월일: 2021년 5월 26일

발 의 자: 송순호, 신낙형, 강선영, 김현희  
김동협, 김성한, 이종숙, 박성호  
이충현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응급의료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주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다.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라. 응급의료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마.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관리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 사. 심폐소생술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아. 그 밖에 홍보, 비밀 준수 의무, 표창,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제11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나. 협조부서: 의약과

다. 입법예고: 2021. 5. 27. ~ 6. 1.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  
술 교육·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  
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  
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  
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

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 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을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6.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정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조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응급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홍보·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두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2.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3.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인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건물” 표지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 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

- 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 12. 2.>
    -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